

「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공고
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「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월 11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

*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

□ 예산 및 규모 : 150억 원, 40,000명 내외

□ 지원기간 :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

* 사업자 변경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 시 재신청 필수

□ 지원대상 :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□ 수행기관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□ 지원내용 : 납부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환급 지원

* 납부 마감 일(매월 10일) 기준, 다음 월에 환급

<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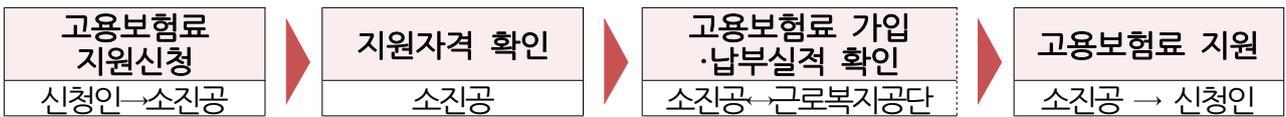
(단위 : 원)

기준등급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
월 보수액	1,820,000	2,080,000	2,340,000	2,600,000	2,860,000	3,120,000	3,380,000
월 보험료	40,950	46,800	52,650	58,500	64,350	70,200	76,050
지원비율	80%		60%		50%		
지원액	32,760	37,440	31,590	35,100	32,175	35,100	38,025

*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'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

**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

□ 지원절차



2 신청방법 및 절차

□ 신청방법

- (온라인 신청)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(go.sbiz.or.kr) 접속 - 로그인 - 상단의 '지원신청' 클릭

□ 신청기간 : '24. 1. 11. ~ 예산소진 시

□ 제출서류 :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

구분	제출서류	제출요령		
소상공인 확인 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1개월) 	'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' 이용	동의 할 경우	- 공단에서 직접 확인
			미동의 할 경우	①, 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, 제출 * ① 온라인 : 홈택스 ② 오프라인 : 무인민원발급기, 관할세무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매출액 확인서류(직전3개년)(일반) 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(면세)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	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' 이용	동의 할 경우	- 공단에서 직접 확인
			미동의 할 경우	①, 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, 제출 * ① 온라인 : 홈택스 ② 오프라인 : 무인민원발급기, 관할세무서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로자 확인 서류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	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' 이용	동의 할 경우	- 공단에서 직접 확인
			미동의 할 경우	①, ②, ③, ④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 * ① 건강보험공단 어플활용 → FAX수신 ②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③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④ 무인민원발급기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근로자 확인 서류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) 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(부과내역) 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	①, ②번을 통해 서류를 발급받아, 제출 * ① 온라인 :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홈택스 ② 오프라인 :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(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) * 직전 1개년(12개월)	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소상공인확인서(유효기간 내)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-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http://sminfo.mss.go.kr) 발급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				

□ 문의처 :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- 1357(중소기업통합콜센터) 사업수행기관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

고용보험 가입대상

-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,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,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(임의가입)

*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

- 단,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, 가입 제한 업종*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

*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, 부동산 임대업 등

보험료

-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*의 2.25% (실업급여 2%,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 0.25%)

<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수준 >

(단위: 원)

구 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6등급	7등급
기준보수*	1,820,000	2,080,000	2,340,000	2,600,000	2,860,000	3,120,000	3,380,000
실업급여(월)	1,092,000	1,248,000	1,404,000	1,560,000	1,716,000	1,872,000	2,028,000
고용보험료(월)	40,950	46,800	52,650	58,500	64,350	70,200	76,050

실업급여

- (수급내용)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 유지, 비자발적 폐업·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~210일간 지급

< 수급 조건 >

- ❶ 적자 지속 :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일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
- ❷ 매출액 감소 :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(기준월)의 월평균 매출액이 ①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②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% 이상 감소
- ❸ 매출액 감소 추세 :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
- ❹ 기 타 : 사업조정 신청 업종,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, 자연재해 피해, 질병·부상 등

문의처

-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: 1588-0075(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)
- 실업급여 관련 안내 : 1350(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)